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각각 ‘지하안전평가’와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용어를 변경하고, 건축물의 건축사업은 지하안전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를 착공신고 수리 전까지 마치도록 특례를 신설하며,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 시 긴급안전조치 명령권자에 시장·군수·구청장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를 추가하고,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에도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350호, 2021. 7. 27. 일부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용어를 개정법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한편, 지하안전평가 협의시기를 건축허가 전에서 착공수리 전으로 개정하고,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 대상 긴급안전조치 명령 시 포함해야 할 사항과 개발사업자가 안전조치 이행결과를 알리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규정 등을 마련하여 개정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용어 변경사항 반영(안 제4조, 제13조~제21조, 제23조~제30조, 제35조, 제38조, 제42조~제45조, 별표 제1~9호, 제12호 개정).

-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각각 ‘지하안전평가’와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변경한 법률 개정안 반영.

나. 건축물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사업의 지하안전평가 결과 협의시기를 건축사업 승인 전에서 착공신고 수리 전으로 변경(안 제13조2항 삭제, 별표1 제15호의2 신설).

-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건축물 정의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축사업의 지하안전평가 협의시기에 특례를 도입한 법률 개정안 반영.

다.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 대상 긴급안전조치 명령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개발사업자가 안전조치의 이행결과를 알리지 않은 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세부규정 마련(안 제22조의2, 안 별표12 제2호 개정).

-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 시에도 지하개발사업자에게 긴급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 개정안 반영.

라.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시 긴급안전조치 명령권자에 시·군·구청장 이외에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 추가(안 제30조 개정).

- 명령권자에 국토부장관과 시·도지사를 추가한 법률 개정안 반영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 및 긴급안전조치”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장제1절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국토교통부 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조치 명령서를 지하개발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안전조치의 내용 및 사유
2. 안전조치의 방법
3. 안전조치의 완료기한

제30조의 제목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를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로 한다.

별표 1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6호를 삭제한다.

15의2. 건축물 설치사업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설치사업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 공신고의 수리 전
-------------------	---------------------------------	-------------------------------

별표 12 제2호 바목부터 같은 호 커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터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 명령의 이행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16호의2	100	300	500
---	-----------------	-----	-----	-----

별표 9 및 별표 12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을 “지하안전영향평가서”로 하고,

제16조 제목, 제16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 제목,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2호, 제17조제3항제1호, 제17조제4항 후단, 제17조제5항, 제19조제2항 후단, 제21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25조제4항 후단, 제4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제2호가목, 별표 3, 별표 5, 별표 7, 별표 9 및 별표 12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각각 “지하안전평가서”로 하며,

제44조제1호, 별표 9 및 별표 12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각각 “지하안전평가등”으로 하고,

제4조제1호, 제3장제1절 제목, 제13조 제목, 제14조 제목,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6조 제목, 제16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 제목,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2호, 제17조제3항제1호, 제17조제4항 후단, 제17조제5항, 제18조제1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19조제2항 후단, 제20조제2항제1호나목, 제21조제1항, 제21조제5항 후단, 제3장제2절 제목, 제23조 제목,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 제24조 제목, 제25조 제목, 제25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25조제4항, 제4장 제목, 제26조 제목, 제27조제1호나목, 제29

조제2항 후단, 제35조제1항제5호, 제38조제2항제5호,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제2호가목, 제43조제1항제9호, 제4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4조제1호, 제44조제2호, 제45조제1호, 제45조제3호, 제45조제4호,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9 및 별표 12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하며,

제21조제3항, 제21조제4항제2호, 제43조제1항제6호가목 및 별표 5 중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를 각각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로 하고,

제21조 제목, 제21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4항제1호, 제21조제4항제2호, 제21조제5항, 제43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제6호가목, 제44조제1호, 별표 3,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12 중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각각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사업의 지하안전평가 결과 협의시기 적용례) 별표1 제15호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u>지하안전영향평가</u>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이하 “ <u>지하안전영향평가</u>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 ----- <u>지하안전평가</u> -----		
		----- <u>지하안전평가</u>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u>제1절 지하안전영향평가</u>		<u>제1절 지하안전평가 및 긴급안전조치</u>		
제13조(<u>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u>) ① (생 략)		제13조(<u>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u>)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4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삭 제>		
제14조(<u>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평가방법 등</u>)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u>지하안전영향평가</u>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제14조(<u>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평가방법 등</u>) -----		
		----- <u>지하안전평가</u> -----		

평가항목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② 책임기술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8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3과 같다.

--.

제15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① ----- 지하안전평가-----

-----.

② ----- 지하안전평가-----

----- 지하안전평가 -----
----- 지하안전평가 -----

-----.

제16조(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 ① -----
-- 지하안전평가서---- 지하안전평가서-----
-----.

②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받은 승인기관의 장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제17조(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생략)
2.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내용의 타당성 여부

② (생략)

② -----

----- 지하안전평가서 -----

-----.

③ ----- 지하안전평가서 -----

-----.

제17조(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① -----
----- 지하안전평가서 -----

--.

1. (현행과 같음)
2. 지하안전평가서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생략)

④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부득이한 사유로 협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5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검토 기준·방법, 보완 또는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③ -----

-----.

1. ----- 지하안전
평가서-----

2. (현행과 같음)

④ -----

-----.
----- 지하안전평가서-----

-----.

⑤ -----
----- 지하안전평가서

-----.

제18조(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

_____.

1. -----
 --- 지하안전평가-----

2. (현행과 같음)

[illegible]

1. · 2. (현행과 같음)

3. ----- 지하안전
평가-----

② _____

30일(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20조(사업계획등의 변경·재협의) ① (생략)

② 법 제18조제4항에서 “해당 사업계획 등의 변경된 내용이 지하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굴착깊이의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생략)

나.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깊이보다 깊어져 법 제23조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법 제14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 지하안전
평가서-----

-----.

제20조(사업계획등의 변경·재협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 지하안전평가 -----
----- 지하안전평가 -----

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 3. (생 략) ③ · ④ (생 략) 제21조(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① <u>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u>(이하 “<u>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u>”라 한다)는 <u>지하안전영향평가서</u>에 기재된 <u>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u> 실시기간에 한다. ② <u>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u>의 조사항목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u>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u>(이하 “<u>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u>”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u>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u>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u>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u>의 내용 및 결과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2. · 3.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① - ----- <u>착공후지하안전조사</u> ----- <u>착공후지하안전조사</u> ----- <u>지하안전평가서</u>-----<u>착공후지하안전조사</u> ----- -. ② <u>착공후지하안전조사</u>----- ----- --. ③ ----- <u>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u> ----- <u>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u> ----- -----. ④ ----- <u>착공후지하안전조사</u> ----- ----- ----- <u>착공후지하안전조사</u> - ----- ----- -----.
--	---

1.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가 실시 중
인 경우: 그 다음 달 10일까지
지난달의 사후지하안전영향조
사 내용. 다만, 사후지하안전
영향조사의 실시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가 종
료된 경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서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
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
⑤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관하여
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사후지
하안전영향조사”로 본다.

<신 설>

1. ----- 착공
후지하안전조사 -----

----- 착공후지하안전조사---
-. ----- 착공후지하안전조사

-----.

2. 착공후지하안전조사 -----

--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⑤ 착공후지하안전조사-----

-----.
지하안전평가----착공후지하
안전조사-----.

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명령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조치명령서를 지하
개발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
다.

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이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하여는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로 본다.

제4장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대행

제26조(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② (생략)

제27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28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8에 따른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 지하안전평가서 -----
지하안전평가서 -----

--.

④ -----
----- 지하안전평가 -----

--. ----- 지하안전평가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지하안전평가서-----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

제4장 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제26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

1. -----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생 략)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u>지하안전영향평가</u> 전문기관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라. (생 략) 2. (생 략) 제30조(<u>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u>) <u>시장·군수·구청장</u>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조치명령서를 <u>지하시설물관리자</u>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35조(<u>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u>) ①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u>지하안전평가</u> ----- ----- ----- ----- ----- ----- ----- 다.·라.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30조(<u>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u>) <u>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u>-----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제35조(<u>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u>) ①
---	--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이하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라 한 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한다. 1. ~ 4. (생략) 5. 지하공간통합지도 분석·연 계를 통한 <u>지하안전영향평가</u>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지원 6. ~ 8. (생략) ② ~ ⑤ (생략) 제38조(위원의 자격 및 임기) ① (생략)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 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 4. (생략) 5. <u>지하안전영향평가</u> 전문기관 ·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생략) ③ (생략) 제42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u>지하안전평가</u> ----- ----- ----- 6.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위원의 자격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지하안전평가</u> ----- -----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	---

· 운영) ① (생략)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③ (생략)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관할 지역이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1. (생략)

2. 법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검토

나. ~ 라. (생략)

3. ~ 5. (생략)

·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하안전평가 -----

-----.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

1. (현행과 같음)

2. ----- 지하안전평가서-----

가. -----
지하안전평가서-----
-

나. ~ 라. (현행과 같음)

3.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20조에 따른 <u>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u>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u>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u> 등의 접수 나. (생략) 7.·8. (생략) 9.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u>지하안전영향평가</u>에 관한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권한 10. ~ 13.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u>지하안전영향평가</u> 전문기관의 실적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나. (생략) 2. 삭제 3. ~ 5. (생략) ③·④ (생략)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	6. ----- <u>착공후지하안전조사</u>----- ----- 가. ----- <u>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u> ----- ----- 나. (현행과 같음) 7.·8. (현행과 같음) 9. ----- -- <u>지하안전평가</u>----- ----- ----- 10. ~ 13. (현행과 같음) ② ----- ----- ----- -----. 1. ----- <u>지하안전평가</u> ----- ----- ----- 가.·나. (현행과 같음) 3. ~ 5.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illegible]

1. -----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
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 지하안전평가등

2. ----- 지하안전
평가 -----

사무	---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 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 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1. 제13조 및 별표 1에 따른 <u>지 하안전영향평가</u> 대상사업의 범위 및 협의의 요청시기	1. ----- <u>지 하안전평가</u>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제23조 및 별표 1에 따른 소 규모 <u>지하안전영향평가</u> 대상 사업의 범위 및 협의의 요청 시기	3. ----- -- <u>지하안전평가</u> ----- ----- -----
4. 제26조 및 별표 8에 따른 <u>지 하안전영향평가</u> 전문기관 등 록기준	4. ----- <u>지 하안전평가</u> ----- -----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14조, 제16조제3항 및 제23조 관련)

구 분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사업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공공주택건설사업 다.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공사사업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바.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협의 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농어촌정비법」 제5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전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사업 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파. 「주택법」 제15조 본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하.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거. 「하수도법」 제2조제9호·제10호·제11호 또는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	1)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전 2)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승인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의 승인 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1)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전
--	---

	·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가 제16호에 따른 건축물 설치사업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가 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 전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4)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전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하는 사업. 다만, 가목·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여 지하안전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완료하기 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승인, 계약 또는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기 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른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항만 및 배후지 조성사업. 다만, 자유무역지역 지정 전 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항만 및 배후지에 대하여 지하안전평가 협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3. 에너지 개발 사업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및 정비사업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및 석유판매업의 시설 중 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시설 중 저장시설 또는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설치 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설치공사 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및 제16호의2에 따른 전기설비의 설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공고 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설치허가 전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인가 전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

	치사업 또는 전선로 설치사업 마.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정비 사업 바.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원설비를 설치·개량하는 사업 사.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 및 정비사업 아.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가스사업	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전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전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다만,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제4호의 가스사업의 경우에는 인·허가등 전
4. 항만의 건설 사업	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개발사업 나.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다만,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마목 공유수면의 매립사업은 제외한다. 다.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건설사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1)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확정 전 2)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행허가 전

	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건설사업 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3)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정권자와의 협의 전 1)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고시 전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3)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전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5. 도로의 건설사업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1)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2)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공사 시행의 허가 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6. 수자원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

의 개발 사업	다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설치사업 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설치사업 다. 「수도법」 제3조제18호에 따른 수도사업 라.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설치사업	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또는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전 1)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전 2)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사업	가.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전용궤도를 포함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사업 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 전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용궤도의 승인 전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2) 그 밖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8. 공항의 건 설 사 업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본 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전
9. 하천의 이용 및 개 발 사 업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 공사 사업	1) 「하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에 따 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전 2) 「하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 가 시행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시행하는 경우: 「하 천법」 제6조에 따른 협 의 또는 승인 전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 전
10. 관광 단 지 의 개 발 사 업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 지의 조성사업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중 유원지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전(관광 숙박업은 같은 법 제15조제1 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광 사업의 허가 또는 신고 전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 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의 설치사업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 시설의 설치사업 마. 「온천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 개발사업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전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11.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 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 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계획의 승인 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 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에 해당하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중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개발 계획의 승인 전 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전 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자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12. 체육 시설의 설치사업	가.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마.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사업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 전 2)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 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조성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설치허가 전
1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사업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4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 전,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전,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 전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 전 1)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 전.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

		항에 따른 허가 전 2)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전 또는 설치신고 전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
14.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15. 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사업	가.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지하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 나.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 토석·모래·자갈을 채취하는 사업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전 1)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위허가 전 2)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전 3) 그 밖의 경우: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전
15의2. 건축물 설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설치사업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의 수리 전

사업		
----	--	--

비고

1.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 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는 대상사업의 협의 요청시기로 한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 가.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나.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다. 굴착 지역이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바다 및 바닷가인 사업
 - 라. 굴착 지역의 경계에서 굴착깊이의 4배 이내의 거리에 제2조 각 호의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
 - 마. 그 밖에 보안상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지하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제14조 관련)

평가항목	평가방법
1. 지반 및 지질 현황	가.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정보분석 나. 시추조사 다. 투수(透水)시험 라. 지하물리탐사(지표레이더탐사, 전기비저항탐사, 탄성과 탐사 등)
2.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가. 관측망을 통한 지하수 조사(흐름방향, 유출량 등) 나. 지하수 조사시험(양수시험, 순간충격시험 등) 다.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
3. 지반안전성	가.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분석 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

비고

1. “시추조사”란 시추기계나 기구 등을 사용하여 지반을 시추하여 시료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투수시험”이란 일정한 수위차에서 일정한 시간 내에 침투하는 물의 양을 측정하여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3. “지하물리탐사”란 지하의 상태나 변화를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반안전성 분석”이란 별표 8 제3호에 따른 해석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학적 해석을 통해 해당 지반의 침하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제16조제1항 관련)

1. 요약문

대상사업의 개요, 대상지역의 설정,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지반안전성 검토,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종합평가 및 결론,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시기에 관한 사항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

2.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사업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등을 기술

3.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사업계획등 또는 지하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설정

4.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기본자료와 시추조사,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작성

5.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기존 관측망 자료와 지하수 조사시험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을 수행하여 작성

6. 지반안전성 검토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으로 나누어 작성

7.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지하안전평가 결과를 기초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계측계획, 차수 및 지반보강 공법 등)으로 수립

8. 종합 평가 및 결론

각각의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를 종합적으로 기술한 후 결론을 도출

9.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시기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부터 시공 완료 전까지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하도록 조사 시기를 명확하게 기록

10. 부록

가. 지하안전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나.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

다. 용어 해설

라.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검토자료

마. 인용 문헌 및 참고자료 등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조사항목 및 방법(제21조제2항 관련)

조사항목	조사방법
1. 지반 및 지질 현황	가. 지하안전평가 검토 나. 지하물리탐사(지표레이더탐사,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탐사 등)
2.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가. 지하안전평가 검토 나. 지하수 관측망 자료, 주변 계측 자료 등 분석
3.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이행 여부	가. 지하안전평가의 지하안전확보방안 적정성 분석 나. 지하안전확보방안 이행 여부 검토
4. 지반안전성	가. 지중경사계, 지표침하계, 하중센서, 균열측정기 등을 통한 계측 나. 계측자료 분석을 통한 지반안전성 및 주변 시설물 영향 분석

비고: “지하물리탐사”란 지하의 상태나 변화를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작성방법(제21조제3항 관련)

1. 요약문

대상사업의 개요, 대상지역의 설정,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지하안전 확보방안의 적정성 및 이행 여부 검토, 지반안전성 검토, 종합평가 및 결론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

2.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대상사업의 개요

사업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등을 기술

3.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대상지역의 설정

지하안전평가에서 설정한 대상지역을 기초로 하여 지하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설정

4.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안전평가 시 획득한 자료, 현장 시공 중 확인된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물 리탐사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작성

5.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지하안전평가 시 획득한 자료 및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 자료, 기존 관측망 자료, 주변 계측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을 검토

6. 지반안전성 검토

지하안전평가 시 획득한 자료와 지반안전성 분석 자료, 계측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지반안전성 검토

7. 지하안전확보방안 적정성 및 이행 여부 검토

- 가. 지하안전평가에서 제시한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적정성을 검토
- 나. 시공 시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이행 여부 확인

8. 종합 평가 및 결론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조사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하고, 각각의 평가결과에 따른 영향정도를 종합적으로 기술한 후 결론을 도출

9. 부록

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나. 지하안전평가서 자료

다.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

라. 용어 해설

마. 지반안정성 계측 및 수치해석 검토 자료

바.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등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제25조제1항 관련)

평가항목	평가방법
1. 지반 및 지질 현황	가.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정보분석 나. 시추조사 다. 투수시험
2.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가. 관측망을 통한 지하수 조사 나. 대상지역의 지하수 흐름 분석
3. 지반안전성	가.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분석 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

비고

1. “시추조사”란 시추기계나 기구 등을 사용하여 지반을 시추하여 시료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투수시험”이란 일정한 수위차에서 일정한 시간 내에 침투하는 물의 양을 측정하여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반안전성 분석”이란 별표 8 제3호에 따른 해석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학적 해석을 통해 해당 지반의 침하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제25조제3항 관련)

1. 요약문

대상사업의 개요, 대상지역의 설정,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지반안전성 검토,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종합평가 및 결론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

2.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사업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등을 기술

3.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사업계획등 또는 지하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설정

4.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기본자료와 시추조사, 투수시험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작성

5.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기존 관측망 자료를 기초로 하여 대상지역의 지하수 흐름 분석을 수행하여 작성

6. 지반안전성 검토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으로 나누어 작성

7.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결과를 기초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계측계획, 차수 및 지반보강 공법 등)으로 수립

8. 종합 평가 및 결론

각각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를 종합적으로 기술한 후 결론을 도출

9. 부록

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나.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

다. 용어 해설

라.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검토자료

마. 인용 문헌 및 참고자료 등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기준(제26조제1항 관련)

구분		기준
1. 자본금		1억원 이상
2. 기술인력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인	2명 이상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2명 이상
	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2명 이상
3. 장비	가. 디지털카메라	1대 이상
	나. 지하시설물 내시경 카메라	1대 이상
	다. 줄자(5m, 50m)	각 1개 이상
	라. 위치확인시스템(GPS)	1대 이상
	마. 지반 거동 수치해석 프로그램	1세트 이상
	바. 침투(Seepage) 해석 프로그램	1세트 이상
	사. 지하수 거동 해석 프로그램	1세트 이상
	아. 압밀해석 프로그램	1세트 이상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르며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라.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의 산정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제2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6개월 이내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제2호나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0일 이내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3) 1) 및 2)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지하안전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해당 업무를 성실히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영업에 대한 정부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등록 후 2년(기간 계산 시 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지하안전평가등의 대 행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28조제1 항제4호	경고	등록취소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다만,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8조제1 항제5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다. 법 제27조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 한 경우 1) 다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을 작성 한 경우 2)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 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 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4)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 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 우 5) 자신이 도급받은 지하안전평가 등 의 업무를 해당 지하개발사업자 또 는 지하시설물관리자의 동의 없이 하도급한 경우 6)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법 제28조제1 항제7호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대여한 경우				
라. 최근 2년간 법 제31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8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마. 지하안전평가등을 수행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하안전평가등을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9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바.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10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제출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제출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인 경우 3) 제출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1호		100 300 500	
나.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2호	300	400	500
다. 법 제20조제1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1호	500	700	1,000
라. 법 제20조제2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2호	500	700	1,000
마. 법 제21조제2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22조제3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1호	1,000	1,500	2,000
바. 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명령의 이행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16호의2	100	300	500
사. 법 제24조제2항제2호 또는 법 제27조제2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3호	500	700	1,000
아. 법 제24조제2항제3호 또는 법 제27조제3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3호	200	300	500
자. 법 제2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법 제56조제2항제4호	500	700	1,000

해당 지하안전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시행과 관련 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않은 경우				
차. 법 제24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사업의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5호	500	700	1,000
카.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4호	200	300	500
타.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휴업·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5호	100	200	300
파.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6호	200	300	500
하.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경우(법 제51조제1항제8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법 제56조제1항제2호	1,000	1,500	2,000
거.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7호	100	200	500
너.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8호	100	200	500
더. 법 제37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9호	100	300	500
러.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10호	100	300	500
머. 법 제39조에 따른 대피 등의 명령을 거부한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11호	100	200	300
버.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1) 수립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수립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인 경우 3) 수립 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12호		100 300 500	
서.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 또	법 제56조제	1,000	1,500	2,000

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1항제3호			
어. 법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비계획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1) 통보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통보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인 경우 3) 통보 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법 제56조제 3항제13호	100	300	500
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 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56조제 3항제14호	50	100	200
처.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갱신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 3항제15호	100	200	300
커.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 유 없이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료 의 제공과 지하정보의 정확도 개선 요 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 3항제16호	100	200	300
터. 법 제46조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6조제 3항제17호	500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연 락 처	044 - 201 - 3584